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27
----------	-------

제출년월일 : 2014. 3.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 사유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 장기재직휴가 신설 :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재충전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기회 제공(안 제24조제13항)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 10일
 -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 : 20일
 - 30년 이상 재직자 : 20일
- 나. 산모 건강관리, 태아보호를 위해서 모성보호시간 신설(안 제24조제4항)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
단,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부여
- 다. 셋째자녀부터의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연가 산정 재직기간에 산입(안 제18조제2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셋째자녀부터의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

라. 연가가산 적용대상 및 인정범위 조정(안 제18조의2)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공무원 이외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력직공무원도 연가 가산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인정범위를 민간경력에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명확히 규정함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사항

- 가. 입법예고 : 2014. 2. 20 ~ 2014. 3. 12 (제출의견 없음)
- 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다.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2014. 3. 18)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있는 경우”를 “있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있는 경우”를 “있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비밀로서”를 “비밀로”로, “경우”를 “사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할 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직, 숙직 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를 “일직·숙직 등의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상근무에 관하여”를 “비상근무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무를”을 “개인적인 일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보”를 “팩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복명”을 “결과 보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본직기관”을 “원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공무원이”로, “본직기관”을 “원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복착용에 관하여”를 “제복착용에”로, “따로 규칙으로”를 “규칙으로 따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증 규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을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년만 해당한다)”를 “1년으로 하되, 셋째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는”을 “공무원에게는”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민간경력”을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가원의 제출”을 “공무원의 연가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차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를 “전염병으로”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기간”을 “기간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에 대하여는”을 “공무원에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육아시간을 얻”을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제1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7조”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로, “같은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라”를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8조의2 관련)

1.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가.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경력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p>제2조(복무선서) ① <u>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비밀엄수) ----- ----- <u>사람은</u> ----- ----- ----- ----- ----- <u>아니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따라</u>----- ----- 2. ----- ----- ----- ----- ----- ----- <u>있는 사항</u> 3. ----- -----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친절·공정) ①·② (생략)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있는 사항

4. -----

----- 비밀로 -----
----- 사항

제5조(친절·공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수행할 때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 일직·숙직 등의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 -----

② (현행과 같음)

③ ----- 비상근무에 -----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
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
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
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
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
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
는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
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
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

제8조(출장공무원) ① -----

----- 개인적인 일을 -----
-----.

② -----

----- 팩
스 -----

-----.

③ -----

----- 결과 보고 -----
-----.

제9조(파견근무) ① -----

----- 공무원은 -----

-----.

② -----
공무원이 -----

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
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
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
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
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
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
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
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
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생략)

-----.

③ -----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

제10조(겸임근무) ① -----
----- 공무원
은 ----- 원 소속기관-----

② ----- 공무원이 -----

----- 원 소
속기관-----
-----.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현행과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생략)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한다)

같음)

② -----
----- 제복착용에 -----
----- 규칙으로 따로 -----

③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증 규정」-----

제18조(연가일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1. -----

----- 1년으로 -----
----- 하되, 셋째자녀부터는 총 휴직 -----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생략)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2. (생략)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 따른 -----

3. (현행과 같음)

③ -----

----- 공무원
에게는-----
-----.

1. 2.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원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 공무원에게는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공무원의 연가 신청 -----

⑤ -----

----- 범위에서 -----

⑥ -----

----- 해당 -----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 5의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략)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 - \text{해당년도 휴직기간}}{12\text{월}} \times \text{해당년도 연가일수}$$

③·④ (생략)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

----- 다
음 연도-----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따른 -----

----- 따라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병가) ① -----

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요양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생략)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③ (생략)

제23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6. ~ 9. (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
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
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
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

1. (현행과 같음)
2. 전염병으로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공가) ----- 공무원-----

--- 기간에 대하여 -----
-----.

1. ~ 4. (현행과 같음)
5.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6. ~ 9. (현행과 같음)

제24조(특별휴가) ① -----

-- 따른 -----
-----.

② ----- 공무원에게는 ---

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 ⑪ (생략)

⑫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7조에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라

③ 여성공무원

④ -----
- 여성공무원-----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 단,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 ⑪ (현행과 같음)

⑫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면직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60일의 범위에서 퇴
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 설>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
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
이 되어 -----

⑬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
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
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
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8조의2 관련)

1.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
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
하지 않으며, 경력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으로 한정한다.